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도 과세가 되며, 토지무상사용익, 무상금전대부,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 증·감자, 합병, 주식전환, 상장·합병시세차익 등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만 한정하여 과세된다.

다만,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가장한 변칙증여의 전형적인 유형(유·무상 혼재거래)이므로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으로 추정하고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매매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토록 하여 위헌소지를 없앴다.

②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증여의제 과세대상 규정과 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 정의에 포함되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증여의제 규정'도 포괄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증여의 유형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증여추정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일반 증여와 달리 입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명의신탁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조세벌 성격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규정하였다.

Ⅱ. 신탁이익의 증여 (법 제33조)

1. 신탁이익 증여의 개요

① 타인에게 신탁이익 향유권리의 증여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 즉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신탁이익권리를 증여한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권리상당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며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면 새로이 신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증여가 된다.

신탁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아 수증자로 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신탁의 개념과 과세관계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당사자 일방이 자기 명의로 권리를 보유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민법상 신탁과 협의의 개념으로 신탁법상 신탁으로 나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는 당사자 일방인 신탁자가 상대방인 수탁자에게 경제상이나 기타의 목적을 초과하여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안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명의신탁과 양도담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주식명의신탁은 증여이며 부동산명의신탁은 실명법상 금지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이전이 되더라도 양도나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본 법상 과세되는 신탁은 협의의 개념인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를 말하는데 특정물건이나 수익을 타인이 향유하도록 하는 관계는 모두 증여로 과세대상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인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라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상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신탁	광의 : 민법상 신탁－명의신탁(주식은 증여의제;부동산명의 신탁은 금지), 양도담보(양도·증여 아님)
	협의 : 신탁법상 신탁－원본과 수익신탁(본 법 제33조), 일반재산신탁(증여의제)

③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멸실과 훼손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신탁이익'이란 이러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신탁이익은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권리와 신탁재산수익의 이익권리로 구분되는데 원본이익권리란 위탁자가 신탁계약시 위탁한 금전이나 동산 및 부동산 자체 등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재산권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탁수익권리란 금전신탁 등의 이자수입이나 저작권의 저작료수입 및 부동산 신탁시의 임차료 수입 등과 같이 신탁원본 이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신탁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

1) 신탁이익권리의 증여시기

①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신탁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면 수익자가 그 원본을 수령한 때를 증여시기로 하며,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수령한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 혹은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한다.

그러나 신탁이익인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을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를 증여시기로 하며 전체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② 신탁원본수취시 과세

신탁이익 증여시의 과세시기는 신탁 계약시점이 아니라 원본이익 수취시기 및 수익 수취시기인데,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하면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신탁원본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일부를 받을 때 그 원본 전체의 이익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신탁원본이익의 일부나 전부를 받은 때란 신탁권리확정시점보다는 실제로 이를 수령한 시점으로 본다.

③ 신탁수익 수취시 과세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재산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하면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수회에 분할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그 수익전체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도 수익의 실제 수령일이 과세시점이다.

④ 신탁이익 수령시까지 증여의제 유보

신탁행위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의 현실적 증여시기는 당해 신탁원본의 이익이나 수익의 이익을 실제적으로 수령할 때로 본다. 즉, 신탁원본이나 수익을 받을 권리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도 신탁행위시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현실적으로 원본이나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받게 되는 때에 증여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현실적으로 받기까지는 원본이나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하여 증여시기가 소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당초의 신탁계약시점부터 현실적인 증여시기까지 기간에는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⑤ 조건부 신탁의 조건 성취후의 이익수취시기

정지조건부나 성취조건부에 의거 신탁이익권리를 수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조건 성취후에 당해 신탁이익을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로 과세된다.

예를 들면 수익자(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면 신탁이익을 받기로 신탁계약된 경우도 손자의 대학입학시점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학입학후에 최초로 신탁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는 때가 증여시기로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물론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신탁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2) 신탁수익자의 확정과 변경

① 납세의무자인 신탁수익자의 확정방법

본 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신탁이익 권리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신탁행위시 위탁자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이익 향유를 승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유한다고 본다. 그러나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을 일단 수익자로 하는바 위탁자가 수익자이면 본인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수익자이면 일단 상속세가 부과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고 후에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새로이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결국 특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원본이나 수익수령시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새로이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는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때 그 수익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수익자 특정 및 변경

신탁설정시 수익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하지만 조건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제2항은 위탁자가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이고 유언신탁이면 위탁자의 상속인이 신탁이익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구성원이 계속 변동되는 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밖에 수익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도 신탁업법상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당초 수익자를 당해 재산의 수탁자로 변경하여 당초의 수익자가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더이상 받지 아니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신탁이익 상속후의 증여계속

신탁재산에 대한 원본과 이익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이익을 실제 수령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당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때 수익수취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자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상속개시후 신탁이익이 실제 실현되어 수익자의 상속인이 받게 된 때에 신탁이익이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Ⅲ. 보험금의 증여 (법 제34조)

1. 보험금 증여의 개요

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보험금상당액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계약상 생명보험수익자와 손해보험 피보험자 등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계약자인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불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만큼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수취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지원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재산을 증여한 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다면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료지원액 자체는 그때그때의 실질증여이다.

② 보험금 증여의 과세요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계약에서의 증여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만의 보험금 상당액인바, 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한하며, ⅱ)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이어야 하며, ⅲ)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부과한다.

보험계약 중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시 재산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해상・운수・화